

##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계획

### 추진배경 · 근거

-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 2025년 상반기 도입을 위한 신청조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및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신청대상자

- 관내 거주 농업인, 관내 결혼이민자 중 농업인

### 향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 신청[읍·면]: 2024. 9. 23. ~ 10. 18.
- 숙소점검확인서[읍·면]: 2024. 10. 25.
- 법무부 도입의향서 제출 및 배정심의 결과 통보[군]: 2024. 11. ~ 12.
- 계절근로자 사업장 근무: 2025. 3. 이후 입국 가능
- 근로기간: 5개월(3개월 추가연장 가능)

※ 계절근로자 입국일자는 법무부 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본프로그램 미신청 시 2025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가 참여불가

#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계획

## I 추진 개요

- 신청기간: 2024. 9. 23.(월) ~ 10. 18.(금)
- 신청대상: 관내 거주 농업인, 관내 결혼이민자 중 농업인
- 내 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인원 및 도입유형에 대한 신청조사
  - 고용주·경영체별 적용작물 및 신청 인원: 최대 4명
    - ※ 농업조합·법인은 자경(공동경작)하고 있는 농지 면적 기준/ 작물재배업 명시
  - 도입유형
    - MOU 체결 가능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주민: 만30~45세
      - ※ 우리군 MOU 체결: 라오스 까시구(2022년), 캄보디아(2023년), 필리핀(2024년)
    -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외국) 4촌 이내 친척: 만19~55세

## II 신청 대상자 및 유의사항

### MOU유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 신청대상: 관내 거주 농업 운영 가구
  - ※ 법인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고용주전액부담
  - ※ 본 프로그램 미신청 시 2025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근로자 도입을 희망하여도 근로자 배정불가.
- 조사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희망 근로인원 신청조사
  -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입국한 날로부터 5개월 (E-8비자)
  - 도입유형
    - MOU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주민(만30~45세)
      - ※ 우리군 MOU 체결 외국 지자체: 라오스 까시구, 캄보디아, 필리핀

○ 자격요건 (필수)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을 이행 가능한 자
    - 최소 근무 일수 보장이 가능한 농가 E-8(5개월 → 113일)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별도 수당이 지급 가능한 농가
    -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의 숙박 공간 제공 불가)
    - 산재보험 가입 및 기타서류\*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농가
    - 기타 출입국 관리법상 사증 발급 제한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
- \* 근로자 도입 시 산재보험 가입(사업장·근로자)은 행정에서 지원.  
기타 서류(근로자 퇴직, 중도퇴사, 보험료산정 등) 신고·접수(출입국사무소·근로복지공단)는 고용주 본인 신고사항으로 서류접수 및 신청 가능한자  
(자세한 사항 9-10p참조)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숙소관련 준수 사항**을 이행 가능한 자
  - 신규 신청 농가의 경우, 농지법 등을 준수하고 합법적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농가 ※ 기존 신청 농가의 경우 합법적 숙소 전환 노력 유도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앞뒤 사본(컬러) 1부, 통장 사본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숙소별 점검확인서 1부(읍면담당자 확인), 숙소 시설표(날짜 미기재)

## □ 결혼이민자의 추천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 신청대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관외 거주 결혼이민자 불가)
  - ※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및 국민과 결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 본 프로그램 미신청 시 2025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근로자 도입을 희망하여도 신규 고용주 신청 제외됨.
- 조사내용: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친척 중 외국인 계절 근로자 참여 희망 인원 신청조사
  -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입국한 날로부터 5개월 (E-8비자)
  - 결혼이민자 자가 고용 가능한 경우만 신청 가능  
(고용주는 본인 또는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함)
- 피추천자(계절근로자) 조건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중 만 19세~55세인 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계절근로자 추천 시 유의 사항
  - 단순 초청·체류 수단으로 계절근로 제도 이용 금지
  - 추천자를 제외한 개인·단체의 중개·알선 금지 및 이익 취득 금지
  - 허위 친척 추천 금지(신뢰할 만한 친척 입증 서류 제출)
    - ※ 친척 입증 서류(출생증명서 등) → 생년월일이 반드시 기입되어 있을 것
  - 결혼이민자의 친척의 경우 지자체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 인정서 또는 사증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 불허 될 수 있음
  - 계절근로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근무 해태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출국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숙소별 점검확인서 1부(읍면담당자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1부, 고용주·결혼이민자 신분증 사본(컬러, 앞뒤, 주민등록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 각 1부, 숙소 시설표 1부

### Ⅲ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기준 및 요건

#### □ 외국인 고용 근로기준

-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무 원칙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지급: 월 2,096,270원 이상(209시간 기준, 2025년 최저임금)
  - 임금은 한국 화폐로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농가에 배정되어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되고, 1개월(30일)마다 정산
- 최소 근무일수: E-8(5개월 → 113일)
- 근무지 이동 제한: 최초 계약한 농가에서만 근무 가능
- 숙 식: 배정받은 고용주가 제공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제 준하는 주거시설 (최대 15% 이상 징수 금지)
  - 그 밖의 주거시설: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최대 8% 이상 징수 금지)
- 산재보험: 고용주 의무가입
- 의 료 비: 근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
  - 상해: 근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처리·근로시간 이외 발생한 상해치료비는 근로자 본인 부담
  - 질병: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희년의료공제회 지정병원(한성병원)에서 처리가능·비급여 진료비는 근로자 본인 부담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요건

- 신체 건강하고 범법 사실이 없을 것
  - 임신 중이거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출산한 사람 제외
  - 활동성 결핵환자 또는 전염병 환자(코로나19 감염자 및 의심자 포함)
  - 마약 복용자 제외, 범죄 및 불법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한 지자체 주민
- 무단이탈 등으로 인하여 추천행위가 금지된 사람이 아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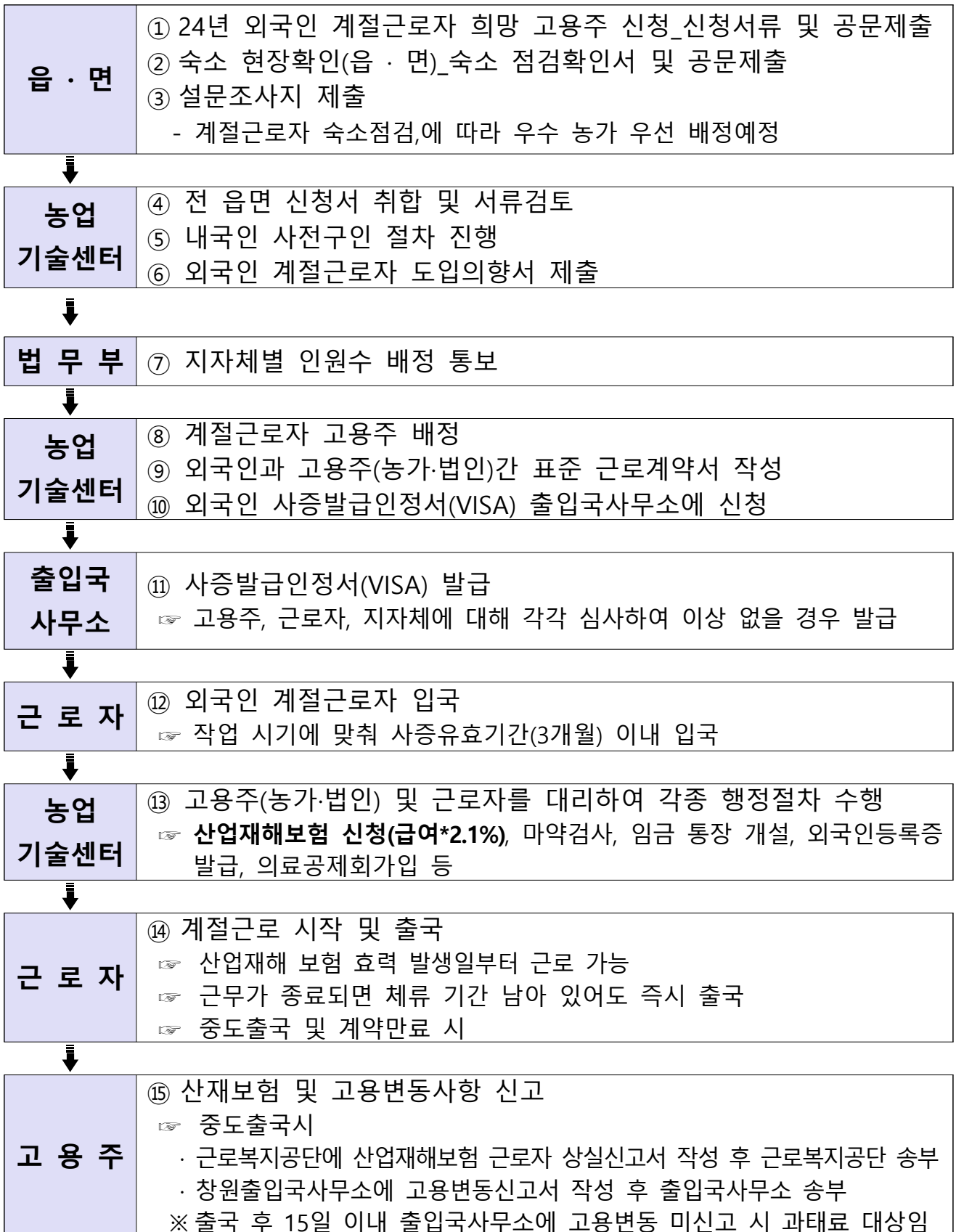
- 국내 불법 체류·취업 및 법 위반 등의 대한민국 입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만한 사실이 없을 것
- ※ 계절근로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근무해태·태업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관과 관계없이 출국할 수 있음

## IV 행정사항

---

- 신청서·첨부서류 제출: 2024. 10. 18.(금)까지 기한엄수
- 숙소별 점검확인서 제출: 2024. 10. 25.(금)까지 기한엄수

## V 신청절차 흐름도



[붙임1]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작물

허용작물	적용작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 쪽파 (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숙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화훼(절화류)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뽕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산딸기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니물(곤드레, 공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고사리, 두릅
⑤ 중요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붙임2]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

### 가.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 계절근로자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주거환경 제공

#### 1)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

※ 외형은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로써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숙소로 사용 가능  
(p.79 ‘계절근로자 숙소별 점검확인서’【붙임6-1】 참조)

#### 2) 필수 시설·물품 구비

-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 취사도구, 침구류
- 소화기, 화재감지기

#### 3)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고용허가제(E-9) 숙식비 지침 준용

-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을 준수하고, 숙소 시설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준의 금액을 징수하되, 다인실의 경우 공동사용을 고려하여 1인당 적정 금액 징수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금액을 명시한 경우 징수하되, 초과 징수 금지)

#### 【숙식비 징수 상한액 기준】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	그 밖의 주거시설 (조립식 숙소, 개조 숙소)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임금의 20%	월 임금의 13%
숙소만 제공 시	월 임금의 15%	월 임금의 8%

※ (해조류 양식업) 숙식비 징수액이 월 통상임금의 최대 10% 초과 금지

(공공형 계절근로) 숙식 모두 제공 시 최대 20%, 숙소만 제공 시 최대 15% 초과 금지

-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 후, 계절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숙식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와 사전 합의 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붙임11]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사전 공제 후 임금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숙식비 공제금액(부담액)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숙식비 공제 동의서'[붙임11]를 제출받아 보관  
(근로계약서상 숙식 정보와 공제금액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 대비)
- ※ 고용주는 원본, 지자체는 사본 보관

## 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고용계약 변동사항 신고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 농·어업인 안전 보험 대체 가입 가능

### 1)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

- 기존 산재보험 가입된 고용주는 보험 실효 여부 확인 후 다음달 15일까지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계절근로자를 최초 고용할 경우 근로개시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① 사업장 산재보험 신청, ② 계절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병행 처리
- ※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고용하는 경우 포함

### 2) 주요 내용

- ① 최초 가입은 가입 주체인 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방문·팩스·온라인(<https://total.kcomwel.or.kr>)
- ②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신고 가능

#### ○ 보험 관계 성립

-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자는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상 가능
- 보험 관계는 고용한 마지막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 제출서류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근로자명부

○ 근로자의 고용 신고

- 입·퇴사 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한 날 또는 고용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일용근로자 :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 개시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 보험 관계 소멸일

-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고용주↔근로자 간 변동사항(중도출국/고용주변동/고용승계/사업장 정보변동) 발생 시 신고

- 출입국 관서에 15일 이내 고용변동신고서, 신분증 사본 팩스 제출
- ※ 신고기한 지났을 시 고용주 책임으로, 과태료 대상임

다. 임금 지급

1)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지급

- 월 실제 근로시간 × 시간급(25년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2) 지자체는 매년 최저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급, 일급, 월급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3) 계약기간이 연도를 달리하면 새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해상작업을 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20% 가산)

○ 최저임금 변동 시 표준근로계약서[붙임10]를 다시 작성해야 함

4)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하여야 함. 다만, 통장 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을 허용하되,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 수령증\*' 및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근로자와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공제 후 임금 지급

※ 임금 중 일부를 제3자(대리인, 중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2부 작성하여 고용주 및 근로자 서명 후 각자 보관

5)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

근무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은 가능(법무심의관실 검토필)

#### 라. 근로장소 및 근로 내용

1)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어가 및 조합·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2) 어업의 경우 원시가공에 한하여 근무 가능(허용 해상작업 외 금지)

3) 지게차 운전 행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하·유통·판매 등 작업 금지

#### 농업조합·법인(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에 명시된 사업장(농지),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농작물의 재배,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 영어조합(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인의 경영체등록증(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출력물,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에 명시된 사업장(선적항·위판장), 선별장(가공공장) 등만 근무 가능
- 법인에서 수산물의 양식, 가공, 유통업을 겸하는 경우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 마.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1)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연장 또는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 시 시간급(10,030원)의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

※ 1일 최대 10시간(식사시간 제외) 이상 근로 금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2)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3) (휴일)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 보장

-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 시 시간급(10,030원)의 1.5배 가산, 8시간 이상 근로 시 2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

**바. 최소 근무일수 보장**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75% 이상 고용 보장

E-8자격 (5개월 체류)	최소 113일(75%) 이상 고용 보장
E-8자격 (8개월 체류)	최소 180일(75%) 이상 고용 보장

※ 단, 고용주 또는 계절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사. 인권 보호**

- 1)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현금카드)을 고용주 또는 제3자가 보관할 수 없음(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에 따라 처벌 대상)
- 2) 폭력(언어폭력 포함), 폭행,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금지

**아. 감염병 예방 조치**

- 1) 작업장 및 숙소제공 시 청결상태 유지
  - 청결 상태 유지, 주기적 환기 및 소독실시, 침구·수건·컵·접시 등 공동사용 금지 등 개인위생 철저히 감염병 발생 예방
- 2) 위생용품 비치 등
  - 위생관련 물품(비누,손세정제, 화장지) 등 작업장에 비치 필요

[붙임3-1]

##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MOU유형 고용주 참여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휴대전화		농업경영체등록 번호	
	주소 (도로명주소)			
	숙소형태	관넬주택/주택/원룸	숙소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없을 시 지번주소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농작업 내용	재배작물	시설원예, 일반채소		작업내용  파종, 수확 등
	재배면적(m <sup>2</sup> )	희망하는 작물의 경영체상 면적 총합		
근로조건 및 임금 지급형태	임금	월2,096,270원	근무시간	209시간 (1일 8시간)
	지급방법	외국인 통장에 직접 입금	휴무 및 휴게시간	월 4회 휴무 1일 1시간(점심시간 포함)
희망인원	도입국적	2025년 3월 이후		합계 (명)
	라오스 / 캄보디아 / 필리핀	남 0명 / 여 0명		남 0명 여 0명
	근로기간	5개월		
	근로자 희망여부 [√]	모든근로자 재고용	일부근로자 재고용	신규근로자 고용
희망근로자 이름				
<p>※ MOU체결된 국가의 근로자와의 희망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기 MOU 체결된 국가의 인원으로 대체 또는 미도입될 수 있음.</p> <p>신청인(확인자)는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대상자 선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창녕군수 귀하</p>				
유의사항	1. 농업 관련 근로자만 신청(축산·임업 등 신청 불가)			

##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유형 참여 신청서

<b>신청자</b> (결혼이민자)	성명 (한글 혹은 영문)		생년월일				
	휴대전화		귀화여부		여/부		
	본국	베트남/캄보디아 등	체류자격		F-6 결혼이민 그 외:		
<b>고용주</b>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경남 창원군					
<b>농작업내용</b>	재배작물	고추, 양파, 등	재배면적 ( m <sup>2</sup> )	희망하는 작물의 경영체상 면적 총합			
<b>근로조건</b>	임금	월2,096,270원	근무시간	209시간 (1일 8시간)			
	지급방법	근로자 통장에 직접 입금	휴무	월 4회 휴무			
	희망근로시기	2025.3.~2025.7.	숙소제공	자택 [ ], 임대 [ ]			
<b>피추천자(외국인 계절근로자) : 명(남 , 여 )</b>							
연번	성명 (여권명)	생년 월일	성별	국적	결혼이민자와의 관계	근로 희망기간	계절근로 경험
						5개월(E-8)	여/부
						5개월(E-8)	여/부
						5개월(E-8)	여/부
<p>※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사증(비자)발급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증(비자)심사에 따라 근로자 입국이 불허될 수 있음 신청인(확인자)는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대상자 선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결혼이민자)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p> <p><b>창녕군수 귀하</b></p>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우자)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원부 불가) 1부.</li> <li>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li> <li>3. 결혼이민자, 고용주 신분증 사본 각 1부</li> <li>4. 주민등록등본 1부.</li> <li>5. 혼인관계증명서 1부.</li> <li>6. 숙소별 점검 확인서(읍면담당자) 및 숙소 시설표 각 1부.</li> </ol>						





[붙임4]

## 외국인 계절근로자 각 숙소별 점검 확인서

구분	점검일자	점검읍면	점검자	비고
점검자	2024. . .	○○읍/면	○○○	

점검대상	고용주명			
	전화번호			
	주소			
점검주거 시설현황	숙소			
	방	면적	수용인원	비고
	<i>1</i>	<i>방1(약○○㎡) 방2(약○○㎡)</i>	<i>○명</i>	

○ 점검내역

연번	점검사항	점검 결과	조치사항
1	부적합 주거시설 여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i>적정</i>	
2	주거 종류	<i>아파트, 주택, 마을회관, 지자체 숙소등 기재</i>	
3	냉·난방 설비	<i>유/무</i>	
4	온수 샤워시설	<i>유/무</i>	
5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있는지 여부	<i>유/무</i>	
6	침구류 및 식기류	<i>유/무</i>	
7	화재 대비(소화기 및 화재 감시기)	<i>유/무</i>	
8	숙박비 금액 과다 여부	<i>적정</i>	
9	작업장과의 거리 적정성	<i>적정</i>	
10	관리자 유무(지자체 숙소일 경우)	<i>해당없음</i>	
11	기타 편의 물품 또는 시설	<i>적정</i>	

○ 기타 사항

- 와이파이 또는 인터넷 (필수 기재): 유/무

○ 첨부 : 숙소 사진

○ 숙소 사진

건물 전경 : 필수	방 : 필수
화장실 : 필수	샤워실 : 필수
소화기 : 필수	화재경보기 : 필수
침구 : 필수	취사 기구 : 필수

[붙임5]

## 숙소 시설표(국문)

### 근무(예정)처 현황

사업장명 (Name of Workplace) 대표자명 기재	소재지 (Address) 주소 기재
대표자 (President) 대표자명 기재	전화번호 (Telephone No.) 전화번호 기재

### 시설 현황

주거시설 유형	<input type="checkbox"/> 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주택 등) <input type="checkbox"/> 고시원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숙박시설	
	<input type="checkbox"/> 가설 건축물 (종류: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input type="checkbox"/> 주거시설 내 혼숙 인원 : 명	
내부시설	침실	<input type="checkbox"/> 남녀구분 <input type="checkbox"/> 남녀미구분
		<input type="checkbox"/> 1인당 침실 크기 : (침실 1개 당 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침실 높이 : m
		<input type="checkbox"/> 잠금장치 유 <input type="checkbox"/> 잠금장치 무
	화장실 등	<input type="checkbox"/> 숙소 내부 <input type="checkbox"/> 숙소 외부 <input type="checkbox"/> 잠금장치 유 <input type="checkbox"/> 잠금장치 무
		<input type="checkbox"/> 수세식 <input type="checkbox"/> 재래식
		<input type="checkbox"/> 입식세면대 <input type="checkbox"/> 샤워시설 <input type="checkbox"/> 욕조
		<input type="checkbox"/> 온수 사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온수 사용 불가
냉·난방시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냉방) 종류: <input type="checkbox"/> (난방) 종류:	
채광 및 환기시설	<input type="checkbox"/> 있음 (종류: ) <input type="checkbox"/> 없음	
소방시설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2024년 월 일

작성자(고용주) : (인)

확인자(외국인) : (인)